

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.

1.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
2. 타 회계 전입금
3. 이월금,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

제3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

1. 도로정비사업
2. 농어촌지역개발사업
3. 수질오염방지사업
4. 청소년 육성사업

제4조(지방채발행등) ①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.

제5조(잉여금의 처리)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.

제6조(준용)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.

1.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
2. 타 회계 전입금
3. 이월금,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

제3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

1. 도로정비사업
2. 농어촌지역개발사업
3. 수질오염방지사업
4. 청소년 육성사업

제4조(지방채발행등) ①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.

제5조(잉여금의 처리)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 한다.

제6조(준용)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내부부

(731-2420)

교부 22170-~~10~~ 010998

1991. 11. 14.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시도(시군)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준칙시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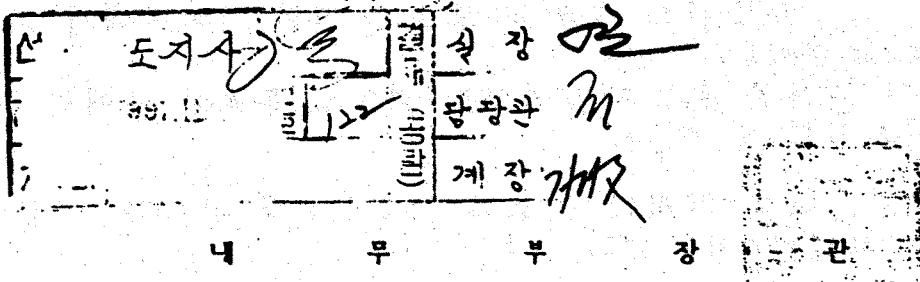
지방양여금대상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도(시군)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준칙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, 동 준칙에 준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1. ० ०시도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준칙 1부.

2. ० ०시군 " " 1부.

3. 세입예산과목(시도·시군별) 1부.

4. 세출예산과목(시도·시군별) 1부. 끝.



내부부 장 관

수신처 : 나02-06, 10-18.

○○市道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準則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○○시도 양여금관리 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.

1.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
2. 타 회계 전입금
3. 이월금,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

제3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 한 경비로 한다.

1. 도로정비사업
2. 농어촌지역개발사업
3. 수질오염방지사업
4. 청소년 육성사업

제4조(지방채발행등) ①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.

제5조(잉여금의 처리)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.

제6조(준용)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